#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24 발의연월일: 2025. 4. 1.

발 의 자:김태호·조승환·김종양

신성범 • 김성원 • 엄태영

박충권 · 서범수 · 최은석

박정하 · 최형두 의원

(11인)

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·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,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·보호 등 일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.

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기부금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 한편,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·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·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, 고향사랑기금의 사 용 목적에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사람으로부터"를 "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·단체로부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"사람에게"를 "사람·법인 또는 단체에게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사람에"를 "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 · 단체에"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타인의"를 "타인 또는 다른 법인 · 단체의"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"사람에게"를 "사람·법인 또는 단체에게"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사람"을 "사람·법인 또는 단체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개인별"을 "기부자별"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 4. 지역인재의 양성

제14조제1항제1호 중 "주민으로부터"를 "주민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에 소재한 법인·단체로부터"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,
1. "고향사랑 기부금"이란 지방	1
자치단체가 주민복리 증진 등	
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재	
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	
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	
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	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
공받거나 모금을 통하여 취득	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・단
하는 금전을 말한다.	체로부터
2. "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"이	2
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, 정	
보통신망의 이용, 그 밖의 방	
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	
고향사랑 기부금을 제공하여	
줄 것을 다른 <u>사람에게</u> 의뢰	사람·법인 또
•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	<u>는 단체에게</u>
말한다.	
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	제4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
주체 및 대상) ① 지방자치단	주체 및 대상) ①
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	

민이 아닌 <u>사람에</u>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·접수할수 있다.

#### ②・③ (생략)

제5조(기부의 제한) ① 누구든지 <u>타인의</u> 명의나 가명으로 고향 사랑 기부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② (생략)

제6조(기부·모금 강요 등의 금지) ① 누구든지 업무·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고향사랑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

#### ② (생략)

- 제8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) ① (생 략)
  -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 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<u>사람</u> (이하 "기부자"라 한다)에게 지 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 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.
  - ③ <u>개인별</u>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2천만원으로 한

<u>사람 또는 해당 지방</u>
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
<u>법인 • 단체에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제5조(기부의 제한) ①
타인 또는 다른 법인·단체의-
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기부·모금 강요 등의 금
지) ①
사람·법인 또는 단체에게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8조(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
및 상한액) ① (현행과 같음)
②
사람·
법인 또는 단체
③ 기부자별

다.

④ (생략)

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 지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른 기금(이하 "고향사랑기금"이라 한다)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, 제3항에 따른 모집·운용비용 및 제4항에 따른 답례품제공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 다만,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<신 설>

<u>4.</u> (생 략)

③ ~ ⑤ (생 략)

제14조(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 7 반환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

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)
① (현행과 같음)
②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지역인재의 양성
<u>5.</u> (현행 제4호와 같음)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제14조(불법 고향사랑 기부금의
반환) ①

자에게 반환하고, 교부된 영수 증을 회수하여야 한다.

- 1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<u>주민으로부터</u>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은 경우
- 2. ~ 7. (생략)
- ② (생 략)

	_
1	_
주민 또는 혀	計
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특	범
<u>인 • 단체로부터</u>	_
2. ~ 7. (현행과 같음)	
② (현행과 같음)	